

울 산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3나8120 임금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벽 담당변호사 이강남
피고, 피항소인	J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종훈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여봉수
제 1 심 판 결	O지방법원 2013. 8. 16. 선고 2012가단12138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0. 1.
판 결 선 고	2014. 12. 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K, B, C, E, G, I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K에게 1,101,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부터, 원고 B에게 1,85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29.부터, 원고 C에게 944,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1.부터, 원고 E에게 94,6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9.부터, 원고 G에게 1,791,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원고 I에게 1,185,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30.부터 각 2014. 12.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D, F, H의 항소 및 원고 K, B, C, E, G, I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D, F, H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같은 원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K, B, C, E, G, I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2/3은 같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K에게 2,731,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부터, 원고 B에게 4,074,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29.부터, 원고 C에게 4,362,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1.부터, 원고 D에게 4,138,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8.부터, 원고 E에게 1,851,8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9.부터, 원고 F에게 1,520,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원고 G에게 4,439,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원고 H에게 1,641,8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27.부터, 원고 I에게 4,799,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30.부터 각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 심에서 각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별지 제1 청구내역표] 기재와 같다. 2014. 6. 2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3. 1.경부터 N시 중부 L메디칼센터에서 'M 산부인과'라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들은 2006. 3. 내지 2011. 6.경 사이에 다음 표 기재 내용과 같이

순번	원고 성명	근무기간	담당업무
1	K	2006. 3. 13. ~ 2010. 7. 31.	조리원
2	B	2006. 9. 12. ~ 2009. 10. 28.	청소원
3	C	2005. 9. 5. ~ 2010. 5. 31.	산후조리사
4	D	2006. 6. 26. ~ 2011. 5. 17.	신생아실 간호사
5	E	2008. 10. 1. ~ 2011. 6. 28.	피부관리실
6	F	2009. 5. 6. ~ 2010. 10. 31.	간호조무사
7	G	2009. 7. 31. ~ 2010. 10. 31.	원무과
8	H	2008. 10. 7. ~ 2011. 2. 26.	간호조무사
9	I	2009. 4. 29. ~ 2011. 6. 29.	산후조리사

M 산부인과에서 근로하던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N지청에 피고가 42,473,439원의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O지방검찰청 검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O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6418호).

다. 한편, 원고들 및 피고의 근로계약서의 임금 조항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연봉 금

순번	원고 성명	약정 연봉액(단위 : 천 만원)
1	K	1,465
2	B	1,248, 1,308(2009. 7.부터)
3	C	1,248
4	D	1,410
5	E	1,430
6	F	1,580, 1,650(2010. 5.부터)
7	G	1,235, 1,272(2010. 8.부터)
8	H	1,650, 1,550(2008. 10.부터), 1,750(2010. 10.부터)
9	I	1,300, 1,348(2010. 6.부터)

액을 정액으로 정하고, '제 수당에는 기본급 외 연간 시간외 근무인 연장, 휴일, 야간 근로수당,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라.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임금은 [별지 제2 지급임금내역표]의 각 기재와 같다(임금은 매월 10일 지급됨).

마. 원고들이 M 산부인과에서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무형태(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¹⁾) 및 원고 K, B, E, I의 근로기간 동안 총 연장·휴일근로시간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원고 성명	주당 통상근무시간	연장·휴일근로시간
1	K	42시간 ²⁾	1,442시간
2	B	47.5시간 ³⁾	912시간
3	C	42시간 ⁴⁾	
4	D	48시간 ⁵⁾	
5	E	46(2011. 5.부터 45)시간 ⁶⁾	827시간
6	F	46시간 ⁷⁾	
7	G	46시간 ⁸⁾	
8	H	46(2011. 1.부터 42)시간 ⁹⁾	
9	I	42시간 ¹⁰⁾	840시간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과 위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2) 월~토, 1주간은 07:00~15:00(7시간), 1주간은 07:00~17:00(9시간), 1주간은 15:00~21:00(5시간)

3) 월~금 8시간, 토 5시간, 일(격주) 5시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3, 4호증의 각 1 내지 9, 갑5, 6호증, 갑7, 8호증의 각 1 내지 6, 갑14호증의 1 내지 7, 갑15, 16호증의 각 1, 2, 3, 을12호증의 1, 2, 을13, 14, 15, 16호증, 을17호증의 1, 2, 3, 을18, 19, 2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제1심의 부산지방법고용노동청N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원고 D, A각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M 산부인과에서 근로를 제공하고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제1 표 기재 내용과 같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임금 개별항목을 구별함이 없이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제반 수당을 포괄하여 총액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포괄임금약정이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그 항목 여하에 불문한 임금총액을 근로약정에 따라 지급하였고, 위 금액이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액에 미달되지도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초과로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임금은 없다.

3. 판단

4) 월~토 7시간

5) 월~토 8시간

6) 월~금 8시간, 토 6시간(2011. 5.부터 5시간)

7) 월~금 8시간, 토 6시간

8) 월~금 8시간, 토 6시간

9) 월~금 8시간(2011. 1.부터 7시간), 토 6시간(2011. 1.부터 7시간)

10) 월~토, 1주간은 07:00~15:00(7시간), 1주간은 07:00~17:00(9시간), 1주간은 15:00~21:00(5시간), 2010. 6.부터 월~토 7시간

가. 포괄임금약정 주장에 관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고,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과연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제 방식으로서 유효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로계약에서 원고들의 근로시간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고, 원고들이 식당 조리원, 청소원, 간호(조무)사, 원무과 직원 등으로서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피고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어 원고들의 업무가 감시·단속적 근로로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거나(피고도 스스로 원고들의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제

출하고 있다. 2012. 7. 18.자 준비서면),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와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위와 같이 근로기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수당 등 임금지급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을 미리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그 산정과 관련한 아무런 기준이 없고(피고도 이러한 점을 인정하면서, 다만 '임금대장'상의 각 항목 기재는 미리 정해진 총액에 따라 피고 측에서 임의로 항목을 만들어 그 금액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014. 3. 25.자 준비서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수당에는 기본급 외 연간 시간외 근무인 연장, 휴일, 야간 근로수당,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는 점, ③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이 일부 원고들에게 불리하고, 달리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으로서의 효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에 따른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따라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각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설령 포괄임금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각종 수당의 지급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나. 최저임금미달액

(1) 계산방식 : 원고들이 각 지급받은 임금 및 수당에서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비교대상임금'액과 법령상 최저임금액을 비교.

(2) 비교대상 임금 : [별지 제2 지급임금내역표] 기재 중 '기본금' 및 '직책', '경력', '부서', '위험' 수당 항목을 포함한다. 피고는 '식대'를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식대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으로서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에 해당하여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소정근로시간 : 월 173시간[1주 40시간 $\times$ (365일 $\div$ 12개월 $\div$ 7일)]

원고들은 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일을 포함하여 209시간[(40시간 + 8시간) $\times$ 365일 $\div$ 12개월 $\div$ 7일]으로 계산하고 있으나,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휴수당 이외에 월별로 지급된 다른 수당들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하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 같지 않은바(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이를 제외한 173시간으로 계산한다.

(4) 계산결과 : [별지 제3 최저임금미달액 계산표] 기재와 같은바, 원고 B에 대하여 931,660원, 원고 C에 대하여 944,620원, 원고 G에 대하여 1,791,470원이 각 최저임금액에 미달된다. 따라서 피고는 최저임금미달액으로 원고 B, C, G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연장·휴일근무수당

(1) 계산방식 :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 4호에 따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눠 환산된 통상임금에 원고들의 연장·휴일 근로시간을 곱한 연장·휴일근무수당액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가산임금비율인 100분의 50을 더하여 계산.

(2) 통상임금 :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은 모두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전액 통상임금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3) 계산결과 : 원고 K, B, E, I에 대한 계산결과는 [별지 제4 연장·휴일근로수당 미달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으며, 피고는 그 중 원고 K, B, E, I이 각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K에게 1,101,180원, 원고 B에게 918,740원, 원고 E에게 94,692원, 원고 I에게 1,185,9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K에게 1,101,180원, 원고 B에게 1,850,400원(= 931,660원 + 918,740원), 원고 C에게 944,620원, 원고 E에게 94,692원, 원고 G에게 1,791,470원, 원고 I에게 1,185,92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임금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퇴사일 다음날인 원고 K은 2010. 8. 1.부터, 원고 B은 2009. 10. 29.부터, 원고 C는 2010. 6. 1.부터, 원고 E은 2011. 6. 29.부터, 원고 G는 2010. 11. 1.부터, 원고 I은 2011. 6. 30.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 K, B, C, E, G, I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D, F, H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K, B, C, E, G, I에 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금원의 지급을 명하되, 위 원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 및 원고 D, F, H의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문춘언

판사 민희진

판사 이상욱

별지 1. 청구 내역표

순번	원고 성명	청구금액		합계
		최저임금미달	연장,휴일근로수당	
1	K	1,630,440	1,101,180	2,731,620
2	B	3,155,510	918,740	4,074,250
3	C	4,362,460		4,362,460
4	D	4,138,350		4,138,350
5	E	1,757,160	94,692	1,851,852
6	F	1,520,700		1,520,700
7	G	4,439,900		4,439,900
8	H	1,641,844		1,641,844
9	I	3,613,160	1,185,920	4,799,080

별지 2. 지급임금내역표 - (1) 원고 K

일시	기본금	수당												합계
		직책	경력	부서	위험	조정	당직	연장	야간	자격증	월차(연차)	생리	식대	
2008년 7월	650,000	50,000	50,000					130,000	100,000		50,000		100,000	1,130,000
2008년 8월	650,000	50,000	50,000					130,000	100,000		50,000		100,000	1,130,000
2008년 9월	650,000	50,000	50,000					130,000	100,000		50,000		100,000	1,130,000
2008년 10월	650,000	50,000	50,000					130,000	100,000		50,000		100,000	1,130,000
2008년 11월	650,000	50,000	50,000				150,000	50,000	100,000		50,000		100,000	1,200,000
2008년 12월	650,000	50,000	50,000				150,000	50,000	100,000		50,000		100,000	1,200,000
2009년 1월	650,000	50,000	50,000				100,000	50,000	100,000		50,000		100,000	1,150,000
2009년 2월	650,000	50,000	50,000				200,000	50,000	100,000		50,000			1,150,000
2009년 3월	650,000	50,000	50,000				100,000	50,000	100,000		50,000		100,000	1,150,000
2009년 4월	650,000	50,000	50,000				150,000	50,000	100,000		50,000		100,000	1,200,000
2009년 5월	650,000	50,000	50,000				190,000	50,000	100,000		50,000		100,000	1,240,000
2009년 6월	650,000	50,000	70,000				210,000	106,930	100,000		50,000		100,000	1,336,930
2009년 7월	650,000	50,000	70,000				250,000	106,930	100,000		50,000		100,000	1,376,930
2009년 8월	650,000	50,000	70,000				210,000	106,930	100,000		50,000		100,000	1,336,930
2009년 9월	650,000	50,000	70,000				210,000	106,930	100,000		50,000		100,000	1,336,930
2009년 10월	650,000	50,000	70,000				280,000	106,930	100,000		50,000		100,000	1,406,930
2009년 11월	650,000	50,000	70,000				140,000	106,930	100,000		50,000		100,000	1,266,930
2009년 12월	650,000	50,000	70,000				140,000	106,930	100,000		50,000		100,000	1,266,930
2010년 1월	650,000	50,000	70,000				400,000	106,930	100,000		50,000		100,000	1,526,930
2010년 2월	650,000	50,000	70,000				180,000	106,930	100,000		50,000		100,000	1,306,930
2010년 3월	650,000	50,000	70,000				210,000	106,930	100,000		50,000		100,000	1,336,930
2010년 4월	650,000	50,000	70,000				210,000	106,930	100,000		50,000		100,000	1,336,930
2010년 5월	650,000	50,000	120,000				210,000	106,930	100,000		50,000		100,000	1,386,930
2010년 6월	650,000	50,000	120,000				210,000	106,930	100,000		50,000		100,000	1,386,930
2010년 7월	650,000	50,000	120,000				249,230	106,930	100,000		50,000		100,000	1,426,160

(2) 원고 B

일시	기본금	수당												합계
		직책	경력	부서	위험	조정	당직	연장	야간	자격증	월차(연차)	생리	식대	
2008년 1월	5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					30,000	30,000	100,000	915,000
2008년 2월	5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					30,000	30,000	100,000	915,000
2008년 3월	5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					30,000	30,000	100,000	915,000
2008년 4월	5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					30,000	30,000	100,000	915,000
2008년 5월	5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					30,000	30,000	100,000	915,000
2008년 6월	550,000	30,000	30,000					200,000			50,000		100,000	960,000
2008년 7월	550,000	30,000	30,000					200,000			50,000		100,000	960,000
2008년 8월	550,000	30,000	30,000					200,000			50,000		100,000	960,000
2008년 9월	550,000	30,000	30,000					200,000			50,000		100,000	960,000
2008년 10월	550,000	30,000	30,000					200,000			50,000		100,000	960,000
2008년 11월	550,000	30,000	30,000					200,000			50,000		100,000	960,000
2008년 12월	550,000	30,000	30,000					200,000			50,000		100,000	960,000
2009년 1월	550,000	30,000	30,000					200,000			50,000		100,000	960,000
2009년 2월	550,000	30,000	30,000					200,000			50,000			860,000
2009년 3월	550,000	30,000	30,000					200,000			50,000		100,000	960,000
2009년 4월	550,000	30,000	30,000					200,000			50,000		100,000	960,000
2009년 5월	550,000	30,000	30,000					200,000			50,000		100,000	960,000
2009년 6월	600,000	30,000	50,000					176,150			50,000		100,000	1,006,150
2009년 7월	600,000	30,000	50,000					176,150			50,000		100,000	1,006,150
2009년 8월	600,000	30,000	50,000				75,000	176,150			50,000		100,000	1,081,150
2009년 9월	600,000	30,000	50,000				21,000	176,150			50,000		100,000	1,027,150
2009년 10월	600,000	30,000	50,000					178,780			50,000			908,780

(3) 원고 C

일시	기본금	수당												합계
		직책	경력	부서	위험	조정	당직	연장	야간	자격증	월차(연차)	생리	식대	
2008년 6월	550,000	30,000	30,000					200,000			50,000		100,000	960,000
2008년 7월	550,000	30,000	30,000					200,000			50,000		100,000	960,000
2008년 8월	550,000	30,000	30,000					200,000			50,000		100,000	960,000
2008년 9월	550,000	30,000	30,000					200,000			50,000		100,000	960,000
2008년 10월	550,000	30,000	30,000					200,000			50,000		100,000	960,000
2008년 11월	550,000	30,000	30,000					200,000			50,000		100,000	960,000
2008년 12월	550,000	30,000	30,000					200,000			50,000		100,000	960,000
2009년 1월	550,000	30,000	30,000					200,000			50,000		100,000	960,000
2009년 2월	550,000	30,000	30,000					200,000			50,000			860,000
2009년 3월	550,000	30,000	30,000					200,000			50,000		100,000	960,000
2009년 4월	550,000	30,000	30,000					200,000			50,000		100,000	960,000
2009년 5월	550,000	30,000	30,000					200,000			50,000		100,000	960,000
2009년 6월	600,000	30,000	50,000					206,930			50,000		100,000	1,036,930
2009년 7월	600,000	30,000	50,000					206,930			50,000		100,000	1,036,930
2009년 8월	600,000	30,000	50,000					206,930			50,000		100,000	1,036,930
2009년 9월	600,000	30,000	50,000					123,540			50,000			853,540
2009년 10월	600,000	30,000	50,000				40,000	206,930			50,000		100,000	1,076,930
2009년 11월	600,000	30,000	50,000					206,930			50,000		100,000	1,036,930
2009년 12월	600,000	30,000	50,000					206,930			50,000		100,000	1,036,930
2010년 1월	600,000	30,000	50,000					206,930			50,000		100,000	1,036,930
2010년 2월	600,000	30,000	50,000					206,930			50,000		100,000	1,036,930
2010년 3월	600,000	30,000	50,000					206,930			50,000		100,000	1,036,930
2010년 4월	600,000	30,000	50,000					206,930			50,000		100,000	1,036,930
2010년 5월	600,000	30,000	50,000					39,340			50,000			769,340

(4) 원고 D

일시	기본금	수당												합계
		직책	경력	부서	위험	조정	당직	연장	야간	자격증	월차(연차)	생리	식대	
2008년 6월	650,000	30,000	30,000			4,620		220,000			50,000		100,000	1,084,620
2008년 7월	650,000	30,000	30,000			4,620		220,000			50,000		100,000	1,084,620
2008년 8월	650,000	30,000	30,000			4,620		220,000			50,000		100,000	1,084,620
2008년 9월	650,000	30,000	30,000				36,150	224,620			50,000		100,000	1,120,770
2008년 10월	650,000	30,000	30,000				50,000	224,620			50,000		100,000	1,134,620
2008년 11월	650,000	30,000	30,000				50,000	224,620			50,000		100,000	1,134,620
2008년 12월	650,000	30,000	30,000				50,000	224,620			50,000		100,000	1,134,620
2009년 1월	650,000	30,000	30,000				50,000	224,620			50,000		100,000	1,134,620
2009년 2월	650,000	30,000	30,000				50,000	224,620			50,000			1,034,620
2009년 3월	650,000	30,000	30,000				50,000	224,620			50,000		100,000	1,134,620
2009년 4월	650,000	30,000	30,000				50,000	224,620			50,000		100,000	1,134,620
2009년 5월	650,000	30,000	30,000				50,000	224,620			50,000		100,000	1,134,620
2009년 6월	650,000	40,000	40,000				50,000	281,540			50,000		100,000	1,211,540
2009년 7월	650,000	40,000	40,000				50,000	281,540			50,000		100,000	1,211,540
2009년 8월	650,000	40,000	40,000				50,000	281,540			50,000		100,000	1,211,540
2009년 9월	650,000	40,000	40,000				57,000	281,540			50,000		100,000	1,218,540
2009년 10월	650,000	40,000	40,000				50,000	281,540			50,000		100,000	1,211,540
2009년 11월	650,000	40,000	40,000				50,000	281,540			50,000		100,000	1,211,540
2009년 12월	650,000	40,000	40,000				50,000	281,540			50,000		100,000	1,211,540
2010년 1월	650,000	40,000	40,000				50,000	281,540			50,000		100,000	1,211,540
2010년 2월	650,000	40,000	40,000				25,000	281,540			50,000		100,000	1,186,540
2010년 3월	650,000	40,000	40,000				38,350	281,540			50,000		100,000	1,199,890
2010년 4월	650,000	40,000	40,000				50,000	281,540			50,000		100,000	1,211,540
2010년 5월	650,000	40,000	40,000				50,000	281,540			50,000		100,000	1,211,540
2010년 6월	650,000	40,000	40,000				50,000	281,540			50,000		100,000	1,211,540
2010년 7월	650,000	40,000	50,000				80,770	302,310			50,000		100,000	1,273,080
2010년 8월	650,000	40,000	50,000				50,000	302,310			50,000		100,000	1,242,310
2010년 9월	650,000	40,000	50,000				50,000	302,310			50,000		100,000	1,242,310
2010년 10월	650,000	40,000	50,000				50,000	302,310			50,000		100,000	1,242,310
2010년 11월	650,000	40,000	50,000				50,000	302,310			50,000		100,000	1,242,310
2010년 12월	650,000	40,000	50,000				50,000	302,310			50,000		100,000	1,242,310
2011년 1월	650,000	40,000	50,000				50,000	302,310			50,000		100,000	1,242,310
2011년 2월	650,000	40,000	50,000				50,000	302,310			50,000		100,000	1,242,310
2011년 3월	650,000	40,000	50,000				89,740	302,310			50,000		100,000	1,282,050
2011년 4월	650,000	40,000	50,000				50,000	302,310			50,000		100,000	1,242,310
2011년 5월	675,640						50,000							725,640

(5) 원고 E

일시	기본금	수당													합계
		직책	경력	주휴	부서	위험	조정	당직	연장	야간	자격증	월차(연차)	생리	식대	
2008년 10월	600,000	100,000	100,000					107,070	150,000			50,000		100,000	1,207,070
2008년 11월	600,000	100,000	100,000					141,810	150,000			50,000		100,000	1,241,810
2008년 12월	600,000	100,000	100,000					135,410	150,000			50,000		100,000	1,235,410
2009년 1월	600,000	100,000	100,000					174,580	150,000			50,000		100,000	1,274,580
2009년 2월	600,000	100,000	100,000					135,650	150,000			50,000		100,000	1,235,650
2009년 3월	600,000	100,000	100,000					112,620	150,000			50,000		100,000	1,212,620
2009년 4월	600,000	100,000	100,000					88,800	150,000			50,000		100,000	1,188,800
2009년 5월	600,000	100,000	100,000					73,350	150,000			50,000		100,000	1,173,350
2009년 6월	600,000	100,000	100,000					77,720	150,000			50,000		100,000	1,177,720
2009년 7월	600,000	100,000	100,000					79,500	150,000			50,000		100,000	1,179,500
2009년 8월	600,000	100,000	100,000					45,240	150,000			50,000		100,000	1,145,240
2009년 9월	600,000	100,000	100,000					54,000	26,000			50,000			930,000
2009년 10월	600,000	100,000	100,000					77,500	150,000			50,000		100,000	1,177,500
2009년 11월	600,000	100,000	100,000					255,500	150,000			50,000		100,000	1,355,500
2009년 12월	600,000	100,000	100,000					56,000	150,000			50,000		100,000	1,156,000
2010년 1월	600,000	100,000	100,000					213,270	150,000			50,000		100,000	1,313,270
2010년 2월	600,000	100,000	100,000					144,620	150,000			50,000		100,000	1,244,620
2010년 3월	600,000	100,000	100,000					63,210	150,000			50,000		100,000	1,163,210
2010년 4월	600,000	100,000	100,000					148,400	150,000			50,000		100,000	1,248,400
2010년 5월	600,000	100,000	100,000					99,120	150,000			50,000		100,000	1,199,120
2010년 6월	600,000	100,000	100,000					55,720	150,000			50,000		100,000	1,155,720
2010년 7월	600,000	100,000	100,000					27,720	150,000			50,000		100,000	1,127,720
2010년 8월	600,000	100,000	100,000					90,300	150,000			50,000		100,000	1,190,300
2010년 9월	600,000	100,000	100,000					147,560	150,000			50,000		100,000	1,247,560
2010년 10월	600,000	100,000	100,000					112,490	150,000			50,000		100,000	1,212,490
2010년 11월	600,000	100,000	100,000					123,480	150,000			50,000		100,000	1,223,480
2010년 12월	600,000	100,000	100,000					169,750	150,000			50,000		100,000	1,269,750
2011년 1월	600,000	100,000	100,000					155,140	150,000			50,000		100,000	1,255,140
2011년 2월	600,000	100,000	100,000					146,150	150,000			50,000		100,000	1,246,150
2011년 3월	600,000	100,000	100,000					187,030	150,000			50,000		100,000	1,287,030
2011년 4월	600,000	100,000	100,000					123,865	150,000			50,000		100,000	1,223,865
2011년 5월	600,000	100,000	100,000					21,000	150,000			50,000		100,000	1,121,000
2011년 6월	600,000	108,890		142,593					178,124			40,741			1,070,348

(6) 원고 F

일시	기본금	수당												합계
		직책	경력	부서	위험	조정	당직	연장	야간	자격증	월차(연차)	생리	식대	
2009년 5월	650,000	50,000	50,000				20,000	112,910			50,000		100,000	1,032,910
2009년 6월	650,000	50,000	50,000				70,000	315,390			50,000		100,000	1,285,390
2009년 7월	650,000	50,000	50,000				135,000	315,390			50,000		100,000	1,350,390
2009년 8월	650,000	50,000	50,000				120,000	315,390			50,000		100,000	1,335,390
2009년 9월	650,000	50,000	50,000				171,000	315,390			50,000		100,000	1,386,390
2009년 10월	650,000	50,000	50,000				135,000	315,390			50,000		100,000	1,350,390
2009년 11월	650,000	50,000	50,000				90,000	315,390			50,000		100,000	1,305,390
2009년 12월	650,000	50,000	50,000				120,000	315,390			50,000		100,000	1,335,390
2010년 1월	650,000	50,000	50,000				105,000	315,390			50,000		100,000	1,320,390
2010년 2월	650,000	50,000	50,000				90,000	315,390			50,000		100,000	1,305,390
2010년 3월	650,000	50,000	50,000				120,000	315,390			50,000		100,000	1,335,390
2010년 4월	650,000	50,000	50,000				120,000	315,390			50,000		100,000	1,335,390
2010년 5월	650,000	50,000	50,000				90,000	315,390			50,000		100,000	1,305,390
2010년 6월	650,000	50,000	50,000				135,000	315,390			50,000		100,000	1,350,390
2010년 7월	700,000	50,000	60,000				218,700	309,230			50,000		100,000	1,487,930
2010년 8월	700,000	50,000	60,000				90,000	309,230			50,000		100,000	1,359,230
2010년 9월	700,000	50,000	60,000				105,000	309,230			50,000		100,000	1,374,230
2010년 10월	700,000	50,000	60,000				45,000	309,230			50,000		100,000	1,314,230

(7) 원고 G

일시	기본금	수당												합계
		직책	경력	부서	위험	조정	당직	연장	야간	자격증	월차(연차)	생리	식대	
2009년 8월	500,000	30,000	20,000				180,000	250,000			50,000		100,000	1,130,000
2009년 9월	500,000	30,000	20,000				201,000	250,000			50,000		100,000	1,151,000
2009년 10월	500,000	30,000	20,000				180,000	250,000			50,000		100,000	1,130,000
2009년 11월	500,000	30,000	20,000				135,000	250,000			50,000		100,000	1,085,000
2009년 12월	500,000	30,000	20,000				135,000	250,000			50,000		100,000	1,085,000
2010년 1월	500,000	30,000	20,000				120,000	250,000			50,000		100,000	1,070,000
2010년 2월	500,000	30,000	20,000				120,000	250,000			50,000		100,000	1,070,000
2010년 3월	500,000	30,000	20,000				135,000	250,000			50,000		100,000	1,085,000
2010년 4월	500,000	30,000	20,000				120,000	250,000			50,000		100,000	1,070,000
2010년 5월	500,000	30,000	20,000				120,000	250,000			50,000		100,000	1,070,000
2010년 6월	500,000	30,000	20,000				150,000	250,000			50,000		100,000	1,100,000
2010년 7월	500,000	30,000	20,000				195,000	250,000			50,000		100,000	1,145,000
2010년 8월	520,000	30,000	20,000				165,000	264,620			50,000		100,000	1,149,620
2010년 9월	520,000	30,000	20,000				180,000	264,620			50,000		100,000	1,164,620
2010년 10월	520,000	30,000	20,000				30,000	264,620			50,000		100,000	1,014,620

(8) 원고 H

일시	기본금	수당												합계
		직책	경력	부서	위험	조정	당직	연장	야간	자격증	월차(연차)	생리	식대	
2008년 10월	650,000	50,000	50,000				40,000	163,450						953,450
2008년 11월	650,000	50,000	50,000				100,000	292,310			50,000		100,000	1,292,310
2008년 12월	650,000	50,000	50,000				70,000	292,310			50,000		100,000	1,262,310
2009년 1월	650,000	50,000	50,000				50,000	292,310			50,000		100,000	1,242,310
2009년 2월	650,000	50,000	50,000				50,000	292,310			50,000			1,142,310
2009년 3월	650,000	50,000	50,000				110,000	292,310			50,000		100,000	1,302,310
2009년 4월	650,000	50,000	50,000				120,000	292,310			50,000		100,000	1,312,310
2009년 5월	650,000	50,000	50,000				20,000	112,910			50,000		100,000	1,032,910
2009년 6월	650,000	50,000	50,000				50,000	292,310			50,000		100,000	1,242,310
2009년 7월	650,000	50,000	50,000				135,000	315,390			50,000		100,000	1,350,390
2009년 8월	650,000	50,000	50,000				120,000	315,390			50,000		100,000	1,335,390
2009년 9월	650,000	50,000	50,000				141,000	292,310			50,000		100,000	1,333,310
2009년 10월	650,000	50,000	50,000				120,000	292,310			50,000		100,000	1,312,310
2009년 11월	700,000	50,000	60,000				105,000	309,240			50,000		100,000	1,374,240
2009년 12월	700,000	50,000	60,000				196,940	309,240			50,000		100,000	1,466,180
2010년 1월	700,000	50,000	60,000				105,000	309,240			50,000		100,000	1,374,240
2010년 2월	700,000	50,000	60,000				105,000	309,240			50,000		100,000	1,374,240
2010년 3월	700,000	50,000	60,000				165,000	309,240			50,000		100,000	1,434,240
2010년 4월	700,000	50,000	60,000				105,000	309,240			50,000		100,000	1,374,240
2010년 5월	700,000	50,000	60,000				120,000	309,240			50,000		100,000	1,389,240
2010년 6월	700,000	50,000	60,000				75,000	309,240			50,000		100,000	1,344,240
2010년 7월	700,000	50,000	60,000				105,000	309,240			50,000		100,000	1,374,240
2010년 8월	700,000	50,000	60,000				90,000	309,230			50,000		100,000	1,359,230
2010년 9월	700,000	50,000	60,000				45,000	309,230			50,000		100,000	1,314,230
2010년 10월	700,000	70,000	70,000				120,000	356,150			50,000		100,000	1,466,150
2010년 11월	700,000	70,000	70,000				135,000	356,150			50,000		100,000	1,481,150
2010년 12월	700,000	70,000	70,000				135,000	356,150			50,000		100,000	1,481,150
2011년 1월	700,000	70,000	70,000				75,000	356,150			50,000		100,000	1,421,150
2011년 2월	700,000	70,000	70,000				60,000	356,150			50,000		100,000	1,406,150

(9) 원고 I

일시	기본금	수당												합계
		직책	경력	부서	위협	조정	당직	연장	야간	자격증	월차(연차)	생리	식대	
2009년 5월	650,000	50,000					150,000	50,000	100,000		50,000		100,000	1,150,000
2009년 6월	650,000	50,000					210,000	50,000	100,000		50,000		100,000	1,210,000
2009년 7월	650,000	50,000					220,000	50,000	100,000		50,000		100,000	1,220,000
2009년 8월	650,000	50,000					280,000	50,000	100,000		50,000		100,000	1,280,000
2009년 9월	650,000	50,000					140,000	50,000	100,000		50,000		100,000	1,140,000
2009년 10월	650,000	50,000					280,000	50,000	100,000		50,000		100,000	1,280,000
2009년 11월	650,000	50,000					140,000	50,000	100,000		50,000		100,000	1,140,000
2009년 12월	650,000	50,000					210,000	50,000	100,000		50,000		100,000	1,210,000
2010년 1월	650,000	50,000					210,000	50,000	100,000		50,000		100,000	1,210,000
2010년 2월	650,000	50,000					210,000	50,000	100,000		50,000		100,000	1,210,000
2010년 3월	650,000	50,000					210,000	50,000	100,000		50,000		100,000	1,210,000
2010년 4월	650,000	50,000					180,000	50,000	100,000		50,000		100,000	1,180,000
2010년 5월	650,000	50,000					210,000	50,000	100,000		50,000		100,000	1,210,000
2010년 6월	650,000	50,000						50,000	100,000		50,000		100,000	1,000,000
2010년 7월	650,000	50,000	50,000				36,920	136,920			50,000		100,000	1,073,840
2010년 8월	650,000	50,000	50,000					136,920			50,000		100,000	1,036,920
2010년 9월	650,000	50,000	50,000					136,920			50,000		100,000	1,036,920
2010년 10월	650,000	50,000	50,000					136,920			50,000		100,000	1,036,920
2010년 11월	650,000	50,000	50,000					136,920			50,000		100,000	1,036,920
2010년 12월	650,000	50,000	50,000					136,920			50,000		100,000	1,036,920
2011년 1월	650,000	50,000	50,000					136,920			50,000		100,000	1,036,920
2011년 2월	650,000	50,000	50,000					136,920			50,000		100,000	1,036,920
2011년 3월	650,000	50,000	50,000					136,920			50,000		100,000	1,036,920
2011년 4월	650,000	50,000	50,000					136,920			50,000		100,000	1,036,920
2011년 5월	650,000	50,000	50,000					136,920			50,000		100,000	1,036,920
2011년 6월	650,000	50,000	50,000					136,920			50,000		100,000	1,036,920

별지 3. 최저임금미달액 계산표 - (1) 원고 K

일시	비교대상임금	소정근로시간	환산임금	법정최저임금	미달액
2008년 7월	750,000	173	4,335	3,770	
2008년 8월	750,000	173	4,335	3,770	
2008년 9월	750,000	173	4,335	3,770	
2008년 10월	750,000	173	4,335	3,770	
2008년 11월	750,000	173	4,335	3,770	
2008년 12월	750,000	173	4,335	3,770	
2009년 1월	750,000	173	4,335	4,000	
2009년 2월	750,000	173	4,335	4,000	
2009년 3월	750,000	173	4,335	4,000	
2009년 4월	750,000	173	4,335	4,000	
2009년 5월	750,000	173	4,335	4,000	
2009년 6월	770,000	173	4,451	4,000	
2009년 7월	770,000	173	4,451	4,000	
2009년 8월	770,000	173	4,451	4,000	
2009년 9월	770,000	173	4,451	4,000	
2009년 10월	770,000	173	4,451	4,000	
2009년 11월	770,000	173	4,451	4,000	
2009년 12월	770,000	173	4,451	4,000	
2010년 1월	770,000	173	4,451	4,110	
2010년 2월	770,000	173	4,451	4,110	
2010년 3월	770,000	173	4,451	4,110	
2010년 4월	770,000	173	4,451	4,110	
2010년 5월	820,000	173	4,740	4,110	
2010년 6월	820,000	173	4,740	4,110	
2010년 7월	820,000	173	4,740	4,110	

(2) 원 고 B

일시	비교대상임금	소정근로시간	환산임금	법정최저임금	미달액(월)
2008년 1월	750,000	173	4,335	3,770	
2008년 2월	750,000	173	4,335	3,770	
2008년 3월	750,000	173	4,335	3,770	
2008년 4월	750,000	173	4,335	3,770	
2008년 5월	750,000	173	4,335	3,770	
2008년 6월	610,000	173	3,526	3,770	42,210
2008년 7월	610,000	173	3,526	3,770	42,210
2008년 8월	610,000	173	3,526	3,770	42,210
2008년 9월	610,000	173	3,526	4,000	82,000
2008년 10월	610,000	173	3,526	4,000	82,000
2008년 11월	610,000	173	3,526	4,000	82,000
2008년 12월	610,000	173	3,526	4,000	82,000
2009년 1월	610,000	173	3,526	4,000	82,000
2009년 2월	610,000	173	3,526	4,000	82,000
2009년 3월	610,000	173	3,526	4,000	82,000
2009년 4월	610,000	173	3,526	4,000	82,000
2009년 5월	610,000	173	3,526	4,000	82,000
2009년 6월	680,000	173	3,931	4,000	12,000
2009년 7월	680,000	173	3,931	4,000	12,000
2009년 8월	680,000	173	3,931	4,000	12,000
2009년 9월	680,000	173	3,931	4,110	31,030
2009년 10월	680,000	161	4,224	4,110	
				미달액 합계	931,660

(3) 원 고 C

일시	비교대상임금	소정근로시간	환산임금	법정최저임금	미달액(월)
2008년 6월	610,000	173	3,526	3,770	42,210
2008년 7월	610,000	173	3,526	3,770	42,210
2008년 8월	610,000	173	3,526	3,770	42,210
2008년 9월	610,000	173	3,526	3,770	42,210
2008년 10월	610,000	173	3,526	3,770	42,210
2008년 11월	610,000	173	3,526	3,770	42,210
2008년 12월	610,000	173	3,526	3,770	42,210
2009년 1월	610,000	173	3,526	4,000	82,000
2009년 2월	610,000	173	3,526	4,000	82,000
2009년 3월	610,000	173	3,526	4,000	82,000
2009년 4월	610,000	173	3,526	4,000	82,000
2009년 5월	610,000	173	3,526	4,000	82,000
2009년 6월	680,000	173	3,931	4,000	12,000
2009년 7월	680,000	173	3,931	4,000	12,000
2009년 8월	680,000	173	3,931	4,000	12,000
2009년 9월	680,000	173	3,931	4,000	12,000
2009년 10월	680,000	173	3,931	4,000	12,000
2009년 11월	680,000	173	3,931	4,000	12,000
2009년 12월	680,000	173	3,931	4,000	12,000
2010년 1월	680,000	173	3,931	4,110	31,030
2010년 2월	680,000	173	3,931	4,110	31,030
2010년 3월	680,000	173	3,931	4,110	31,030
2010년 4월	680,000	173	3,931	4,110	31,030
2010년 5월	680,000	173	3,931	4,110	31,030
				미달액 합계	944,620

(4) 원 고 D

일시	비교대상임금	소정근로시간	환산임금	법정최저임금	미달액
2008년 6월	710,000	173	4,104	3,770	
2008년 7월	710,000	173	4,104	3,770	
2008년 8월	710,000	173	4,104	3,770	
2008년 9월	710,000	173	4,104	3,770	
2008년 10월	710,000	173	4,104	3,770	
2008년 11월	710,000	173	4,104	3,770	
2008년 12월	710,000	173	4,104	3,770	
2009년 1월	710,000	173	4,104	4,000	
2009년 2월	710,000	173	4,104	4,000	
2009년 3월	710,000	173	4,104	4,000	
2009년 4월	710,000	173	4,104	4,000	
2009년 5월	710,000	173	4,104	4,000	
2009년 6월	730,000	173	4,220	4,000	
2009년 7월	730,000	173	4,220	4,000	
2009년 8월	730,000	173	4,220	4,000	
2009년 9월	730,000	173	4,220	4,000	
2009년 10월	730,000	173	4,220	4,000	
2009년 11월	730,000	173	4,220	4,000	
2009년 12월	730,000	173	4,220	4,000	
2010년 1월	730,000	173	4,220	4,110	
2010년 2월	730,000	173	4,220	4,110	
2010년 3월	730,000	173	4,220	4,110	
2010년 4월	730,000	173	4,220	4,110	
2010년 5월	730,000	173	4,220	4,110	
2010년 6월	730,000	173	4,220	4,110	
2010년 7월	740,000	173	4,277	4,110	
2010년 8월	740,000	173	4,277	4,110	
2010년 9월	740,000	173	4,277	4,110	
2010년 10월	740,000	173	4,277	4,110	
2010년 11월	740,000	173	4,277	4,110	
2010년 12월	740,000	173	4,277	4,110	
2011년 1월	740,000	173	4,277	4,110	
2011년 2월	740,000	173	4,277	4,110	
2011년 3월	740,000	173	4,277	4,110	
2011년 4월	740,000	173	4,277	4,110	
2011년 5월	675,640	95	7,112	4,110	

(5) 원 고 E

일시	비교대상임금	소정근로시간	환산임금	법정최저임금	미달액
2008년 10월	800,000	173	4,624	3,770	
2008년 11월	800,000	173	4,624	3,770	
2008년 12월	800,000	173	4,624	3,770	
2009년 1월	800,000	173	4,624	3,770	
2009년 2월	800,000	173	4,624	3,770	
2009년 3월	800,000	173	4,624	3,770	
2009년 4월	800,000	173	4,624	3,770	
2009년 5월	800,000	173	4,624	4,000	
2009년 6월	800,000	173	4,624	4,000	
2009년 7월	800,000	173	4,624	4,000	
2009년 8월	800,000	173	4,624	4,000	
2009년 9월	800,000	173	4,624	4,000	
2009년 10월	800,000	173	4,624	4,000	
2009년 11월	800,000	173	4,624	4,000	
2009년 12월	800,000	173	4,624	4,000	
2010년 1월	800,000	173	4,624	4,000	
2010년 2월	800,000	173	4,624	4,000	
2010년 3월	800,000	173	4,624	4,000	
2010년 4월	800,000	173	4,624	4,000	
2010년 5월	800,000	173	4,624	4,110	
2010년 6월	800,000	173	4,624	4,110	
2010년 7월	800,000	173	4,624	4,110	
2010년 8월	800,000	173	4,624	4,110	
2010년 9월	800,000	173	4,624	4,110	
2010년 10월	800,000	173	4,624	4,110	
2010년 11월	800,000	173	4,624	4,110	
2010년 12월	800,000	173	4,624	4,110	
2011년 1월	800,000	173	4,624	4,110	
2011년 2월	800,000	173	4,624	4,110	
2011년 3월	800,000	173	4,624	4,110	
2011년 4월	800,000	173	4,624	4,110	
2011년 5월	800,000	173	4,624	4,110	
2011년 6월	708,890	161	4,403	4,110	

(6) 원고 F

일시	비교대상임금	소정근로시간	환산임금	법정최저임금	미달액
2009년 5월	750,000	173	4,335	3,770	
2009년 6월	750,000	173	4,335	3,770	
2009년 7월	750,000	173	4,335	3,770	
2009년 8월	750,000	173	4,335	3,770	
2009년 9월	750,000	173	4,335	3,770	
2009년 10월	750,000	173	4,335	3,770	
2009년 11월	750,000	173	4,335	3,770	
2009년 12월	750,000	173	4,335	4,000	
2010년 1월	750,000	173	4,335	4,000	
2010년 2월	750,000	173	4,335	4,000	
2010년 3월	750,000	173	4,335	4,000	
2010년 4월	750,000	173	4,335	4,000	
2010년 5월	750,000	173	4,335	4,000	
2010년 6월	750,000	173	4,335	4,000	
2010년 7월	810,000	173	4,682	4,000	
2010년 8월	810,000	173	4,682	4,000	
2010년 9월	810,000	173	4,682	4,000	
2010년 10월	810,000	173	4,682	4,000	

(7) 원고 G

일시	비교대상임금	소정근로시간	환산임금	법정최저임금	미달액(월)
2009년 8월	550,000	173	3,179	3,770	102,210
2009년 9월	550,000	173	3,179	3,770	102,210
2009년 10월	550,000	173	3,179	3,770	102,210
2009년 11월	550,000	173	3,179	3,770	102,210
2009년 12월	550,000	173	3,179	3,770	102,210
2010년 1월	550,000	173	3,179	3,770	102,210
2010년 2월	550,000	173	3,179	3,770	102,210
2010년 3월	550,000	173	3,179	4,000	142,000
2010년 4월	550,000	173	3,179	4,000	142,000
2010년 5월	550,000	173	3,179	4,000	142,000
2010년 6월	550,000	173	3,179	4,000	142,000
2010년 7월	550,000	173	3,179	4,000	142,000
2010년 8월	570,000	173	3,295	4,000	122,000
2010년 9월	570,000	173	3,295	4,000	122,000
2010년 10월	570,000	173	3,295	4,000	122,000
				미달액 합계	1,791,470

(8) 원 고 H

일시	비교대상임금	소정근로시간	환산임금	법정최저임금	미달액
2008년 10월	750,000	173	4,335	3,770	
2008년 11월	750,000	173	4,335	3,770	
2008년 12월	750,000	173	4,335	3,770	
2009년 1월	750,000	173	4,335	3,770	
2009년 2월	750,000	173	4,335	3,770	
2009년 3월	750,000	173	4,335	3,770	
2009년 4월	750,000	173	4,335	3,770	
2009년 5월	750,000	173	4,335	4,000	
2009년 6월	750,000	173	4,335	4,000	
2009년 7월	750,000	173	4,335	4,000	
2009년 8월	750,000	173	4,335	4,000	
2009년 9월	750,000	173	4,335	4,000	
2009년 10월	750,000	173	4,335	4,000	
2009년 11월	810,000	173	4,682	4,000	
2009년 12월	810,000	173	4,682	4,000	
2010년 1월	810,000	173	4,682	4,000	
2010년 2월	810,000	173	4,682	4,000	
2010년 3월	810,000	173	4,682	4,000	
2010년 4월	810,000	173	4,682	4,000	
2010년 5월	810,000	173	4,682	4,110	
2010년 6월	810,000	173	4,682	4,110	
2010년 7월	810,000	173	4,682	4,110	
2010년 8월	810,000	173	4,682	4,110	
2010년 9월	810,000	173	4,682	4,110	
2010년 10월	840,000	173	4,855	4,110	
2010년 11월	840,000	173	4,855	4,110	
2010년 12월	840,000	173	4,855	4,110	
2011년 1월	840,000	173	4,855	4,110	
2011년 2월	840,000	160	5,250	4,110	

(9) 원 고 |

일시	비교대상임금	소정근로시간	환산임금	법정최저임금	미달액
2009년 5월	700,000	173	4,046	3,770	
2009년 6월	700,000	173	4,046	3,770	
2009년 7월	700,000	173	4,046	3,770	
2009년 8월	700,000	173	4,046	3,770	
2009년 9월	700,000	173	4,046	3,770	
2009년 10월	700,000	173	4,046	3,770	
2009년 11월	700,000	173	4,046	3,770	
2009년 12월	700,000	173	4,046	4,000	
2010년 1월	700,000	173	4,046	4,000	
2010년 2월	700,000	173	4,046	4,000	
2010년 3월	700,000	173	4,046	4,000	
2010년 4월	700,000	173	4,046	4,000	
2010년 5월	700,000	173	4,046	4,000	
2010년 6월	700,000	173	4,046	4,000	
2010년 7월	750,000	173	4,335	4,000	
2010년 8월	750,000	173	4,335	4,000	
2010년 9월	750,000	173	4,335	4,000	
2010년 10월	750,000	173	4,335	4,000	
2010년 11월	750,000	173	4,335	4,000	
2010년 12월	750,000	173	4,335	4,110	
2011년 1월	750,000	173	4,335	4,110	
2011년 2월	750,000	173	4,335	4,110	
2011년 3월	750,000	173	4,335	4,110	
2011년 4월	750,000	173	4,335	4,110	
2011년 5월	750,000	173	4,335	4,110	
2011년 6월	750,000	167	4,491	4,110	

별지 4. 연장·휴일근로수당 미달액 계산표 - (1) 원고 K

일시	합계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통상임금	연장휴일 근로시간	가산임금	기지급액	미달액(월)
2008년 7월	1,130,000	182	6,209	46	285,604	230,000	55,604
2008년 8월	1,130,000	182	6,209	82	509,121	230,000	279,121
2008년 9월	1,130,000	182	6,209	46	285,604	230,000	55,604
2008년 10월	1,130,000	182	6,209	60	372,527	230,000	142,527
2008년 11월	1,200,000	182	6,593	54	356,044	300,000	56,044
2008년 12월	1,200,000	182	6,593	60	395,604	300,000	95,604
2009년 1월	1,150,000	182	6,319	68	429,670	250,000	179,670
2009년 2월	1,150,000	182	6,319	46	290,659	350,000	
2009년 3월	1,150,000	182	6,319	60	379,121	250,000	129,121
2009년 4월	1,200,000	182	6,593	60	395,604	300,000	95,604
2009년 5월	1,240,000	182	6,813	66	449,670	340,000	109,670
2009년 6월	1,336,930	182	7,346	66	484,821	416,930	67,891
2009년 7월	1,376,930	182	7,566	52	393,409	456,930	
2009년 8월	1,336,930	182	7,346	62	455,438	416,930	38,508
2009년 9월	1,336,930	182	7,346	48	352,597	416,930	
2009년 10월	1,406,930	182	7,730	76	587,509	486,930	100,579
2009년 11월	1,266,930	182	6,961	62	431,592	346,930	84,662
2009년 12월	1,266,930	182	6,961	38	264,524	346,930	
2010년 1월	1,526,930	182	8,390	76	637,619	606,930	30,689
2010년 2월	1,306,930	182	7,181	38	272,875	386,930	
2010년 3월	1,336,930	182	7,346	62	455,438	416,930	38,508
2010년 4월	1,336,930	182	7,346	52	381,980	416,930	
2010년 5월	1,386,930	182	7,620	62	472,471	416,930	55,541
2010년 6월	1,386,930	182	7,620	52	396,266	416,930	
2010년 7월	1,426,160	182	7,836	48	376,130	456,160	
				1442		미달액 합계	1,614,948

(2) 원 고 B

일시	합계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통상임금	연장휴일 근로시간	가산임금	기지금액	미달액(월)
2008년 1월	915,000	206	4,442	36	239,854	0	239,854
2008년 2월	915,000	206	4,442	48	319,806	0	319,806
2008년 3월	915,000	206	4,442	48	319,806	0	319,806
2008년 4월	915,000	206	4,442	36	239,854	0	239,854
2008년 5월	915,000	206	4,442	48	319,806	0	319,806
2008년 6월	960,000	206	4,660	42	293,592	200,000	93,592
2008년 7월	960,000	206	4,660	36	251,650	200,000	51,650
2008년 8월	960,000	206	4,660	48	335,534	200,000	135,534
2008년 9월	960,000	206	4,660	42	293,592	200,000	93,592
2008년 10월	960,000	206	4,660	42	293,592	200,000	93,592
2008년 11월	960,000	206	4,660	42	293,592	200,000	93,592
2008년 12월	960,000	206	4,660	36	251,650	200,000	51,650
2009년 1월	960,000	206	4,660	54	377,476	200,000	177,476
2009년 2월	860,000	206	4,175	36	225,437	200,000	25,437
2009년 3월	960,000	206	4,660	42	293,592	200,000	93,592
2009년 4월	960,000	206	4,660	36	251,650	200,000	51,650
2009년 5월	960,000	206	4,660	42	293,592	200,000	93,592
2009년 6월	1,006,150	206	4,884	36	263,748	176,150	87,598
2009년 7월	1,006,150	206	4,884	36	263,748	176,150	87,598
2009년 8월	1,081,150	206	5,248	42	330,643	251,150	79,493
2009년 9월	1,027,150	206	4,986	36	269,253	197,150	72,103
2009년 10월	908,780	206	4,412	48	317,632	178,780	138,852
				912		미달액 합계	2,959,722

(3) 원 고 E

일시	합계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통상임금	연장휴일 근로시간	가산임금	기지금액	미달액(월)
2008년 10월	1,207,070	199	6,066	24	218,364	257,070	
2008년 11월	1,241,810	199	6,240	24	224,649	291,810	
2008년 12월	1,235,410	199	6,208	24	223,491	285,410	
2009년 1월	1,274,580	199	6,405	24	230,577	324,580	
2009년 2월	1,235,650	199	6,209	24	223,535	285,650	
2009년 3월	1,212,620	199	6,094	24	219,368	262,620	
2009년 4월	1,188,800	199	5,974	24	215,059	238,800	
2009년 5월	1,173,350	199	5,896	24	212,264	223,350	
2009년 6월	1,177,720	199	5,918	24	213,055	227,720	
2009년 7월	1,179,500	199	5,927	30	266,721	229,500	37,221
2009년 8월	1,145,240	199	5,755	30	258,974	195,240	63,734
2009년 9월	930,000	199	4,673	24	168,241	80,000	88,241
2009년 10월	1,177,500	199	5,917	30	266,269	227,500	38,769
2009년 11월	1,355,500	199	6,812	24	245,216	405,500	
2009년 12월	1,156,000	199	5,809	30	261,407	206,000	55,407
2010년 1월	1,313,270	199	6,599	24	237,576	363,270	
2010년 2월	1,244,620	199	6,254	24	225,157	294,620	
2010년 3월	1,163,210	199	5,845	24	210,430	213,210	
2010년 4월	1,248,400	199	6,273	24	225,841	298,400	
2010년 5월	1,199,120	199	6,026	30	271,158	249,120	22,038
2010년 6월	1,155,720	199	5,808	24	209,075	205,720	3,355
2010년 7월	1,127,720	199	5,667	24	204,010	177,720	26,290
2010년 8월	1,190,300	199	5,981	30	269,163	240,300	28,863
2010년 9월	1,247,560	199	6,269	24	225,689	297,560	
2010년 10월	1,212,490	199	6,093	30	274,181	262,490	11,691
2010년 11월	1,223,480	199	6,148	24	221,333	273,480	
2010년 12월	1,269,750	199	6,381	30	287,129	319,750	
2011년 1월	1,255,140	199	6,307	24	227,061	305,140	
2011년 2월	1,246,150	199	6,262	24	225,434	296,150	
2011년 3월	1,287,030	199	6,467	24	232,830	337,030	
2011년 4월	1,223,865	199	6,150	24	221,403	273,865	
2011년 5월	1,121,000	195	5,749	20	172,462	171,000	
2011년 6월	1,070,348	195	5,489	15	123,502	178,124	
				827		미달액 합계	375,609

(4) 원 고 |

일시	합계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통상임금	연장휴일근로 시간	가산임금	기지금액	미달액(월)
2009년 5월	1,150,000	182	6,319	76	720,330	200,000	520,330
2009년 6월	1,210,000	182	6,648	52	518,571	260,000	258,571
2009년 7월	1,220,000	182	6,703	38	382,088	270,000	112,088
2009년 8월	1,280,000	182	7,033	76	801,758	330,000	471,758
2009년 9월	1,140,000	182	6,264	38	357,033	190,000	167,033
2009년 10월	1,280,000	182	7,033	66	696,264	330,000	366,264
2009년 11월	1,140,000	182	6,264	38	357,033	190,000	167,033
2009년 12월	1,210,000	182	6,648	62	618,297	260,000	358,297
2010년 1월	1,210,000	182	6,648	66	658,187	260,000	398,187
2010년 2월	1,210,000	182	6,648	62	618,297	260,000	358,297
2010년 3월	1,210,000	182	6,648	48	478,681	260,000	218,681
2010년 4월	1,180,000	182	6,484	38	369,560	230,000	139,560
2010년 5월	1,210,000	182	6,648	76	757,912	260,000	497,912
2010년 6월	1,000,000	182	5,495	8	65,934	50,000	15,934
2010년 7월	1,073,840	182	5,900	8	70,803	173,840	
2010년 8월	1,036,920	182	5,697	8	68,368	136,920	
2010년 9월	1,036,920	182	5,697	8	68,368	136,920	
2010년 10월	1,036,920	182	5,697	8	68,368	136,920	
2010년 11월	1,036,920	182	5,697	8	68,368	136,920	
2010년 12월	1,036,920	182	5,697	8	68,368	136,920	
2011년 1월	1,036,920	182	5,697	8	68,368	136,920	
2011년 2월	1,036,920	182	5,697	8	68,368	136,920	
2011년 3월	1,036,920	182	5,697	8	68,368	136,920	
2011년 4월	1,036,920	182	5,697	8	68,368	136,920	
2011년 5월	1,036,920	182	5,697	8	68,368	136,920	
2011년 6월	1,036,920	182	5,697	8	68,368	136,920	
				840		미달액 합계	4,049,945